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김용석(도봉) 의원 대표발의)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111
------	------

2017. 11. 28.
기획경제위원회

I .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년 10월 16일, 김용석의원(도봉)외 12명

나. 회부일자 : 2017년 10월 18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77회 정례회】

- 제10차 기획경제위원회(2017. 11. 28)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 의결(원안가결)

II . 제안설명의 요지(김용석 의원)

-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에 대한 일괄정비를 통해 법적 안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으로써 자치법규 접근성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윤병국)

가. 조례안의 개요

-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안전 분야 전문 용어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서울시 자치법규의 일괄개정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자치법규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나. 자치법규 일괄개정

- 지방자치가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시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자치법규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이에 따라 자치법규의 수와 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시(이하 “시”)에는 시민의 생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579건의 다양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음.
- 하지만, 상위법령 개정 등의 사유에 따라 조례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더라도 입법기술적으로 이를 적시에 모두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이런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조례 개정 사항을 일괄해서 정비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지속적으로 있어왔고, 실제로

법제처는 자치법규 입안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발행한 「자치법규 입안매뉴얼」에서 일괄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의 개정취지가 같거나, 예산이나 행정제도의 개편에 따라 관련성이 깊은 정책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복수의 자치법규 개정안을 하나의 개정안에 포함하여 개정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괄정비 형식으로 복수의 조례를 개정하고 있으며, 시에서도 이와 유사한 방식의 조례 개정을 실시한 바 있음.

〈표〉 서울시 일괄조례 형식 조례 처리 현황

연 번	발의 일시	조 례 명	발의자	처리결과
1	2003. 2	서울특별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등의 정비에관한조례안	시장	가결
2	2004. 1	서울특별시관광안내소설치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	시장	가결
3	2007. 10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간행물에 의한 광고계약 및 해지 등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시장	가결
4	2008. 4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시장	가결
5	2008. 6	서울특별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정비 조례안	의원	폐기
6	2009. 1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디지털행정 촉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시장	가결

7	2009. 12	행정서식 일괄개정을 위한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시장	가결
8	2010. 10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시장	철회
9	2011. 6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관광진흥위원회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시장	철회
10	2014. 10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계류중
11	2015. 9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의원	가결
12	2015. 12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일괄정비 조례안	의원	가결
13	2016. 12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의원	가결

- 시에서는 2003년 이후 모두 13회에 걸쳐 자치법규와 각종 위원회를 일괄정비 형식으로 개정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며, 이 가운데 9건의 일괄정비 조례안이 가결된 바 있음.
- 위와 같은 취지에 따라 본 조례안은 다른 상임위원회의 의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난 8월 23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42개의 ‘안전 분야 전문 용어 순화 기준’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설치 기준 등에 관한 조례」를 포함한 15건의 조례를 일괄해서 정비하고자 함.
- 일괄정비 형식의 조례안 처리는 입법방식의 효율성과 자치법규

정비를 통한 시민의 편익 증진이라는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자칫 각 상임위원회의 의안심사권과 충돌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이 고려되어야 함.

- 따라서, 법제처가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개정취지가 동일하고 개별 상임위원회의 고유한 의안심사권한을 제한하지 않는 비교적 사소한 법령개정사항 등으로 그 한계가 명확히 설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빈도도 최소한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7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에 대한 일괄정비를 통해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으로써 자치법규 접근성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공개공지”를 “공개공지(空地: 공터)”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내측간격”을 “안쪽간격”으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이상인 물건적치”를 “이상 물건을 쌓아 놓는”으로 한다.

제46조제2항 중 “전면부”를 “앞면부”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오수”를 “오수(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

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26조제4항 중 “적치하거나”를 “쌓아 두거나”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수도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5항 중 “적치하거나”를 “쌓아 두거나”로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적치하거나”를 “쌓아 두거나”로 한다.

제36조제3항 중 “적치하거나”를 “쌓아 두거나”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적치하거나”를 “쌓아 두거나”로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가목(1) 중 “공개공지계획”을 “공개공지(空地: 공터)계획”으로 한다.

제9조(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공지기준”을 “공지(空地: 공터)기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공개공지·조경”을 “공개공지(空地: 공터)·조경”으로 한다.

제24조제2항제1호 중 “공지”를 “공지(空地: 공터)”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개공지 또는”을 “공개공지(空地: 공터) 또는”으로 한다.

제27조제1호 중 “하천·구거부지”를 “하천·구거(도랑)부지”로 한다.

제10조(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공지”를 각각 “공지(空地: 공터)”로 한다.

제11조(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동등”을 “동등한 수준”으로 한다.

제8조제6항제3호 중 “동등”을 “동등한 수준”으로 한다.

제12조(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호 중 “폐도·폐구거·폐제방”을 “폐도·폐구거(폐도랑)·폐제 방”으로 한다.

제13조(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정온”을 각각 “평온” 으로 한다.

제14조(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 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자동심장제세동기”를 “자동심장충격기”로 한다.

제15조(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구배”를 “기울기”로 한다.

별표 1의 “구배”를 각각 “기울기”로 한다.

제16조(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응급 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자동제세동기”(자동심장충격기)란”을 ““자동심장충격기”
란”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